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9. 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8. 16. 이한동 의원 외 7명

나. 회부일자: 2024. 8. 19.

다. 상정일자: 제270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9. 2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이한동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2018년 12월부터 구성·운영되었던 5개 시범동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16개 전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
다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입법예고 : 2024. 8. 7. ~ 8. 14. 결과: 의견 없음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폐지조례안은 이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2018년 12월부터 구성·운영되었던 5개 시범동 주민자치회를 폐지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16개 전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타 자치구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
 -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각 자치구의 환경에 적합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·통합되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짐.
 -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양립하지 않고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중임.

자치구명	시범사업 조례 현황			주민자치(위원회) 추진 현황		비 고
	제정	제/개정	폐지	주민자치회	주민자치위원회	
송 파 구				○	○	
은 평 구	○	○		○		
강 서 구				○		
서 초 구					○	
강 동 구				○		
강 남 구					○	

자치구명	시범사업 조례 현황			주민자치(위원)회 추진 현황		비 고
	제정	제/개정	폐지	주민자치회	주민자치위원회	
구 로 구				○	○	
동 작 구	○	○		○		
마 포 구	○		폐지 예정		○	
중 구						
용 산 구				○		
영 등 포 구				○		
금 천 구				○		
성 북 구	○	○		○		
관 악 구				○		
중 량 구	○	○		○		
동 대 문 구				○		
광 진 구				○	○	
서 대 문 구				○		
양 천 구				○		
종 로 구	○				○	시범사업 조례 유지
강 북 구				○		
성 동 구	○	○		○	○	
도 봉 구				○		
노 원 구				○		

○ 종합 검토의견

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“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”의 종료로 인하여 우리구는 2018년 12월부터 구성·운영되었던 5개 시범동의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하지 않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16개 전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 중이고 타 자치구도 자치구 특성에 맞게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조례 정비를 감안한다면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